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

2017년 7월

정 종 일

목 차

① 국외훈련 개요	1
②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2
③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	7
I. 머리말	7
II.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9
1. 국제기구의 역사	9
2. 국제기구의 정의	9
3. 국제기구의 유형	11
4. 국제기구의 현황	14
5. 국제기구의 유치효과	25
III. 국제기구의 유치과정과 소재지 결정 요인	29
1. 국제기구 유치과정	29
2.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 요인	31
3. 시사점	37
IV. 국제기구 유치사례 분석	38
1. 독일 국제기구 유치사례(본을 중심으로)	38
2. 스위스 국제기구 유치사례(제네바를 중심으로)	40
3. 벨기에 국제기구 유치사례(브뤼셀을 중심으로)	42
4. 싱가포르 국제기구 유치사례	43
5. 기타 유치사례	45
6. 시사점	45
V.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47
VI. 맺음말	55
참고문헌	57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싱가포르

2. 훈련기관명 : 리관유 스쿨
(Lee Kuan School of Public Policy)

3. 훈련분야 : 도시행정

4. 훈련기간 : 2016. 8월 ~ 2017. 7월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소 속	행정국	직 급	행정 5급	성 명	정 종 일
훈련분야	도시행정				
훈련과제	국제단체 · 기관 · 연구소 유치방안				
훈 련 국	싱가포르				
훈련기관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훈련기간	2016. 8.16 ~ 2017. 7. 31				
보 고 내 용					
제 목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매수	58		
<p>가. 연구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화와 함께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효율적 ·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짐.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국제기구의 유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 · 외교적, 사회 · 문화적 효과가 큰 분야임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을 아시아의 국제허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20년까지 50개 국제기구를 유치 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기준 서울 소재 국제기구는 30개소로 아직까지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2020년까지 50개의 국제기구 유치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유치과정, 유치요건 및 다른 나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나.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 국제기구는 19세기부터 특정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부터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 군사, 기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이 이루어 짐
- 국제기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조약에 의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일정한 목적아래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로서, ‘적어도 3개국의 회원이 있고, 다수 국가에서 활동을 하며, 그 회원들이 형식적 협정으로 묶여 있는 단체”를 의미
- 국제기구는 설립주체에 따라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제협회연합의 국제기구연감에서는 국제기구를 1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국제기구·비독립적기구·국제기구 대체조직·국내설립 국제기구·비활동기구 등 5개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함
- 국제협회연합(UIA)에 의해 제공되는 ‘Open Yearbook’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말 기준 국제기구는 69,282개로 이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구의 수는 36,605개로 전체의 52.8%를 차지
-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중 정부 간 국제기구는 4,823개로 전체의 13.2%를,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31,782개로 전체의 86.8%를 차지함

다. 국제기구의 유치과정과 소재지 결정요인

- 국제기구 본부 유치과정은 국제기구 설립단계, 국제기구 유치단계, 국제기구 유치 후 후속조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기구 설립단계에서는 국제기구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기구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며, 국제기구 유치 단계에서는 국제기구 선정절차 및 기준 최종 확정, 국제기구 유치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 국제기구 유치국을 최종 확정.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유치 후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본부협정 협의 및 확정 후 본부 출범 절차를 거침
-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요인으로는 국제기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의 국제기구에 대한 법인격 및 행위능력 부여 능력, 국제기구 및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의 범위, 행·재정적 지원과 정주여건, 국가(도시)의 매력적인 이미지, 국제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와 기여 가능성, 기타 유치 희망국의 안전보장 확보, 주도적인 국제기구 설립노력, 전문적인 홍보 등이 있음

라. 국제기구 유치활성화를 위한 제언

- 국제기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강력한 국제기구 유치 의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왜냐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제기구는 UN 관련 기구이거나 정부 간 기구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협조 및 지원이 필요
- 두 번째는 글로벌 도시 서울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국제기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각국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조건이 유사성 띄어 가고 있음. 따라서 많은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한 국가(도시)들의 예에서 보듯이 글로벌 도시 서울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 필요
- 세 번째는 국제기구의 설립취지, 목적 등에 따른 맞춤형 전략수립 필요. 국제기구의 설립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을 때 기후변화 원조규모가 세계 2위인 독일이나 국제기구 중심 도시인 스위스 등 강력한 경쟁국을 물리치고 유치국이 될 거라고 기대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았음

그러나 녹색기후기금의 설립취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음.

- 네 번째는 민·관·정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치권의 전 방위적인 지원이 있을 때 가능
- 다섯 번째는 국제기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DATA 구축 필요.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 유치를 주도하거나 설립 논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왜냐하면, 국제기구의 기본적인 조직구조, 업무내용, 지배구조 등을 규정하는 설립방안 (Governing Instrument)과 국제기구 유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이 국제기구 설립 시 대부분 마련되기 때문임
- 여섯 번째는 서울시의 국제네트워크 지속적인 확대 필요. 국제기구 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국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패키지 및 경쟁력 있는 유치 제안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 설립, 기존 국제기구의 이전, 새로운 지역 사무국의 설치 등 국제기구 변화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국제기구 설립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위원회 구성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실제로 각국 정부대표나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펼치게 되는 다양한 설득작업도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때 관련부처·지자체 및 민간위원 등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일곱 번째는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 필요.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국가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교 사회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파급효과 대비 국제기구 유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국제기구 유치 이후에 처음 의도한 바와 달리 기대한 만큼의 운영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국제기구 유치에 위한 제도 기반 확립, 국제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간의 협조체계 구축, 국제기구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기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 입주기구의 업무 편의성 확보 및 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필요

마. 맺음말

- 글로벌화와 함께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국가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가 큼.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에서도 ‘아시아의 국제기구 허브, 서울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2020년까지 50개 국제기구를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
- 결국,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국제기구 허브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국제기구의 일원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 여건 등의 마련도 필요
-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기구에서 우리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I. 머리말

- 글로벌화와 함께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커짐.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국제기구의 유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효과가 큰 분야임
 - 국제기구 유치는 해당 국제기구 자체의 사업추진 및 소비 지출과 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이 상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고용 유발효과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및 고용 창출에 기여
 - 또한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증대함은 물론 국제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제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 및 국제화 등에 기여할 것임
- UN 사무총장 및 세계은행 총재 배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으로 세계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증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 상승으로 국제기구 유치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기준 국제회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음

표 1.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현황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2	891	4	636	3	635	5	563	6	469	8	464	11	347

-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기구 유치실적은 아래 표2와 같이 영국, 벨기에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주요국가 국제기구 사무국 현황

(단위 : 개)

구분	미국	벨기에	영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국제기구	3,646	2,194	2,048	270	133	86	75	43

* 자료출처 : 국제기구 한국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한국관광공사, 2012.12)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을 아시아의 국제허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20년까지 50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3.8월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9개의 핵심 사업을 선정(자문단 운영, 중점 유치대상 선정, 국제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 전용공간 운영 등)하여 추진
 - 2014.1월부터 해외도시협력반(2015.1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을 신설하여 국제기구 유치업무 등을 전담
 - 2016.2월 「2016년 국제기구 유치·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유치활동과 더불어 교류협력 강화로 국제기구 유치효과 증대 추진
- 그러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기준 서울 소재 국제기구는 30개소로 아직까지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2020년까지 50개의 국제기구 유치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유치과정, 유치요건 및 다른 나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Ⅱ.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1. 국제기구의 역사

- 국제기구는 19세기부터 특정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부터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 군사, 기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이 이루어 짐
 - 19세기에는 국제하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1831년 Mayence협약으로 창설된 라인강위원회, 1856년 파리조약에 의해 창설된 도나우강 위원회가 있으며, 1865년에는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국전신연합을, 1868년에는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국전기통신 연합 등이 설립됨
 - 20세기에는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는데 1920년에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설립되었고, 1945년에는 2차 세계 대전 종전을 계기로 평화 유지,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설립됨
 - 또한 국제노동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전문기구, 국제철도연맹과 같은 교통기구, 유엔개발계획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피스·국경 없는 기자회견과 같은 비정부 기구, 국제축구연맹과 같은 스포츠 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군사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설립됨

2. 국제기구의 정의

- 국제기구는 “조약에 의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일정한 목적 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 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로 국제기관·국제조직·국제단체라고도 함. 국가, 즉 정부를 구성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부간 기구1)’라 불리기도 함. 따라서 국제적 민간단체인 ‘국제비정부기구2)’와는 구별된다.”

1)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IGO

2)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라고 정의되고 있음(두산백과)

- 또한 국제기구연맹(UIA)에 의하여 발간되는 국제기구연감(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공적 또는 사적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국제기구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8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국제기구연감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첫째, 최소한 3개국 이상을 포함하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회원은 완전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3개국 이상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참여가 있어야 하며 당해 기구가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국가가 조직을 통제하는 표결권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헌장은 회원에게 주기적으로 집행기관 및 직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식적인 조직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모든 직원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동일한 국가의 국민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최소한 3개국 이상으로부터 실질적인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다른 기구와의 기구적 차원의 관계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직원을 선출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의 활동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규모, 정치적 성향, 이념, 활동분야, 본부의 지리적 위치, 분류상의 명칭 등은 어떠한 기구가 국제기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련이 없다.”³⁾고 규정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국제조약에서 국제기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1980년 효력이 발생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국제기구를 정부 간 기구로 간단히 규정⁴⁾하고 있으나
- UN의 국제법위원회(ILC)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 최철영, 글로벌시대 국내유치 국제기구의 법인격:한·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통권 제44호, 2013, P.218

4)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69, Article 2(Use of terms) (i) “international organization” mean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동 조약은 1969년 5월 23일 채택되었으며, 1980년 1월 27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155.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관한 잠정 초안의 정의⁵⁾ 제2조에서는 본 초안규정 목적에 따른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조약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서에 의하여 설립되고, 당해 기구 자체의 국제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국제기구는 국가 외에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여기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당해 초안 규정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

3. 국제기구의 유형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 국제기구는 설립주체에 따라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로 분류될 수 있음
- 정부간 기구(IGO)는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통상 조약체결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 조직으로 상설적 내부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로서 정부간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라고 말함
- 정부간 기구는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있음
 - 지역적 국제기구에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있음
- 또한 정부간 기구는 “종합적 국제기구”와 “전문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음

5) ILC Report(2003) on the work of fifty-fifth ses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ports, fifty-eighth session, Supplement NO.10(A/58/10), Chapter IV.

- 종합적 국제기구에는 세계의 평화, 안보, 인권, 지속가능개발,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 회원국의 정치·외교·안보·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 공동체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대표적이며
- 전문적 국제기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 등이 있음
- 한편 비정부기구(NGO)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간 기구 이외의 기구”로서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 환경문제, 난민 증가 등 글로벌 문제의 다양화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들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비정부기구 또한 국제기구로 인정받으면 그 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비정부 기구 중 대표적인 사례는 1971년에 설립된 그린피스를 들 수 있음.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가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50여개 이상의 국가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그린피스는 “세계 최대 환경운동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협약에 관여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방지, 원시림 보호, 해양 보호, 고래잡이 방지, 유전자 조작 반대, 핵위협 저지, 독성물질의 제거, 반전운동 등 실시하여 세계적인 환경파괴의 경각심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 외에도 1947년 출범한 국제표준화기구, 1971년 설립된 국경없는 의사회, 1985년에 설립된 국경없는 기자회 등이 있음
- 그리고 정부간 기구가 “지리적 범위, 기구의 설립 목적에 따라 분류”되는 반면, 비정부기구(NGO)는 아래 표3과 같이 설립 목적 및 방법 등의 다양화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3. 비정부간기구 유형

명칭	형 태
AGO	반정부기구(Antigovernmental Organizations)
TRANGO	초국가적비정부기구(Transnational NGOs)
GONGO	정부가 조직한 비정부기구(government-organized NGOs)
GRINGO	정부가 규정하고 창설한 비정부기구(government-regulated and initiated NGOs)
BINGO	기업과 산업 비정부기구(business and industry NGOs)
DONGO	기증자가 조직한 비정부기구(donor-organized NGOs)
DODONGO	기증자가 지배하는 비정부기구(donor-dominated NGOs)
ODANGO	ODA가 재정 지원하는 비정부기구(ODA-financed NGOs)
FLAMINGO	과시적인 비정부기구(flashy-minded NGOs:부유국을 대표)
PO	대중기구(people's organizations)
ONGO	행동하는 비정부기구(operational NGOs)
ANGO	옹호적인 비정부기구(advocacy NGOs)
TSMO	초국가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GSM	글로벌 사회운동(global social movements)

* 자료출처 : 김계동외(2007); Karns & Minst(2004)

2) 국제협회연합(UIA)에 의한 분류

- 국제협회연합의 국제기구연감에서는 국제기구를 15개의 유형 (A~U)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국제기구·비독립적 기구·국제기구 대체조직·국내설립 국제기구·비활동기구 등 5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 국제기구연감에 따르면 “A, B, C, D, F 유형은 국제기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구라 할 수 있으며, A, B, C, D 유형의 경우 국가간 협약을 통해 조직된 국제기구로 전통적인 형태의 국제기구라 할 수 있음. 그리고 F유형의 경우에는 기금이나,

적립금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구로서 국제기구의 업무를 좀 더 안정적이면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의 유형이며, E유형은 A~D와 F유형의 국제기구에 의해 창설된 단체 또는 센터 등으로 국제 기구의 보조기구 성격”을 지님

표 4. 국제기구 유형분류표⁶⁾

대분류	약칭	유형
국제기구	A	Feder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	Universal membership organizations
	C	Intercontinental membership organizations
	D	Regionally defined membership organizations
	F	Organizations having a special form
비독립적기구	E	organizations emanating from places, persons or other bodies
	K	Subsidiary and internal bodies
	R	Religious orders, fraternities and secular institutes
국제기구의 대체조직	S	Autonomous conference series
	T	Mult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국내설립 국제기구	G	Internationally-oriented national organizations
	N	National organizations
비활동기구	H	Inactive or dissolv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	Recently reported or propo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	Inactive or dissolved non-conventional bodies

4. 국제기구 현황

1) 개요

- 국제협회연합(UIA)에 의해 제공되는 ‘Open Yearbook’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말 기준 국제기구는 69,282개로 이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구의 수는 36,605개로 전체의 52.8%를 차지

6) 국제협회연합(UIA)에 의해 제공되는 ‘Open Yearbook’ 내용 요약정리

-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중 정부 간 국제기구는 4,823개로 전체의 13.2%를,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31,782개로 전체의 86.8%를 차지함
- 또한 이를 국제협회연합의 대분류(cluster)에 따라 분류하면 국제기구는 15,250개, 비독립적기구 5,980개, 국제기구 대체조직 3,217개, 국내설립 국제기구 12,158개, 비활동 기구 32,677개로 나누어짐
 - 국제기구 15,250개 중 정부 간 기구는 997개로 약 6.5%를 차지하고, 비정부 간 기구는 14,253개로 약 93.5%를 차지
 - 비독립적기구 5,980개 중 정부 간 기구는 1,137개 약 19%를 차지하고, 비정부 간 기구는 4,843개로 약 81%를 차지
 - 국제기구 대체조직 3,217개 중 정부 간 기구는 2,534개로 약 78.8%를 차지하고, 비정부 간 기구는 683개로 약 21.2%를 차지
 - 국내설립 국제기구 12,158개 중 정부 간 기구는 155개로 약 1.3%를 차지하고, 비정부 간 기구는 12,003개로 약 98.7%를 차지
- UN을 비롯한 정부 간 기구의 본부는 미국, 스위스,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세계 국제기구 현황

대분류	세부분류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합계
Cluster I 국제기구	A	Feder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	38	39
	B	Universal membership organizations	37	543	580
	C	Intercontinental membership organizations	35	1,705	1,740
	D	Regionally defined membership organizations	206	6,941	7,147
	F	Organizations having a special form	718	5,026	5,744
	소계		997	14,253	15,250

대분류	세부분류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합계
Cluster II 비독립적기구	E	Organizations emanating from places, persons or other bodies	908	3,270	4,178
	K	Subsidiary and internal bodies	229	666	895
	R	Religious orders, fraternities and secular institutes	0	907	907
	소계		1,137	4,843	5,980
Cluster III 국제기구의 대체조직	S	Autonomous conference series	88	683	771
	T	Mult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2,446	0	2,446
	소계		2,534	683	3,217
Cluster IV 국내설립 국제기구	G	Internationally-oriented national organizations	154	8,615	8,769
	N	National organizations	1	3,388	3,389
	소계		155	12,003	12,158
합계			4,823	31,782	36,605

2) 정부 간 국제기구의 국가별 분포 현황

- UN을 비롯한 정부 간 기구의 본부는 대부분 유럽과 북미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질서와 이슈들이 유럽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 간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 유럽은 프랑스가 38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위스 350개, 벨기에 145개, 영국 136개, 이탈리아 100개, 오스트리아 86개, 독일 80개의 본부가 위치
-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이 293개로 미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본부가 위치해 있고, 캐나다 57개, 칠레 21개, 가이아나 17, 브라질 16개의 본부가 위치
-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이 48개로 가장 많은 정부 간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33개, 인도네시아 33개, 일본 23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은 케냐와 이집트가 각 41개로 가장 많은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네갈 21개, 에티오피아 20개, 카메룬 17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은 피지가 10개, 호주 8개, 뉴질랜드 5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표 6. 주요 국가별 정부 간 기구 본부 현황

지역	국가	합계	국제기구 (A~D,F)	비독립적 기 구 (E,K,R)	국제기구의 대체 조직 (S,T)	국내설립 국제기구 (G,N)
유럽	프랑스	381	62	76	238	5
	스위스	350	56	87	203	4
	벨기에	145	46	53	39	7
	영국	136	41	21	85	3
	이탈리아	100	25	50	21	4
	오스트리아	86	21	30	30	5
	독일	80	23	27	24	6
미주	미국	293	75	105	93	20
	캐나다	57	11	10	33	3
	칠레	21	2	18	0	1
	가이아나	17	6	11	0	0
	브라질	16	5	10	0	1
아시아	태국	48	19	27	1	1
	인도네시아	33	11	19	3	0
	사우디아라비아	33	16	13	3	1
	일본	23	9	8	1	5
	인도	18	7	9	0	2
	말레이시아	18	8	8	1	0
	한국	16	10	5	0	1
	필리핀	16	5	10	0	1
	싱가포르	6	4	2	0	0

지역	국가	합계	국제기구 (A~D,F)	비독립적 기 구 (E,K,R)	국제기구의 대체 조직 (S,T)	국내설립 국제기구 (G,N)
아프리카	케냐	41	14	24	4	1
	이집트	41	14	25	0	2
	세네갈	21	11	10	0	0
	에티오피아	20	5	14	1	0
	카메룬	17	6	11	0	0
오세아니아	피지	10	4	6	0	0
	호주	8	0	4	2	2
	뉴질랜드	5	2	1	1	1

3)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국가별 분포 현황

- 비정부 간 국제기구 본부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간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유럽지역과 미주지역에 많은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에서는 영국이 2,744개로 가장 많은 본부를 유치하고 있으며, 벨기에 2,461, 프랑스 2,096개, 독일 1,568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이 6,608개의 본부를 유치하고 있으며, 캐나다 791개, 아르헨티나 195개, 브라질 167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정부 간 국제기구 본부 분포와는 달리 일본이 491개로 가장 많은 본부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도 391개, 한국 224개, 싱가포르 193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고 있는 있음
-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46개로 가장 많은 본부를 유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케냐 227개, 이집트 127개, 나이지리아 123개의 본부가 위치하여 활동하고 있음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호주는 정부 간 국제기구 본부가 8개에 불과했으나 비정부 간 국제기구 본부는 692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뉴질랜드에 99개, 피지에 43개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표 7. 주요 국가별 비정부 간 기구 본부 현황

지역	국가	합계	국제기구 (A~D,F)	비독립적 기 구 (E,K,R)	국제기구의 대체 조직 (S,T)	국내설립 국제기구 (G,N)
유럽	영국	2,744	1,287	308	32	1,117
	벨기에	2,461	1,515	512	11	423
	프랑스	2,096	851	502	26	717
	독일	1,568	790	240	21	517
	이탈리아	1,116	375	453	8	280
	스위스	1,033	598	188	5	242
	네덜란드	1,030	586	151	2	291
미주	미국	6,608	1,741	455	52	4,261
	캐나다	791	283	78	7	383
	아르헨티나	195	142	23	0	29
	브라질	167	110	14	1	40
	멕시코	161	99	19	2	39
아시아	일본	491	211	45	6	229
	인도	339	125	60	2	152
	한국	224	125	27	6	66
	싱가포르	193	122	24	2	45
	필리핀	172	94	38	4	36
	말레이시아	164	97	44	4	19
	중국	150	82	22	1	45
	태국	149	83	26	3	37
	홍콩	128	79	17	1	31

지역	국가	합계	국제기구 (A~D,F)	비독립적 기 구 (E,K,R)	국제기구의 대체 조직 (S,T)	국내설립 국제기구 (G,N)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346	153	37	1	155
	케냐	227	124	46	3	54
	이집트	127	80	19	1	27
	나이지리아	123	56	5	1	61
	가나	87	41	15	1	30
오세아니아	호주	692	246	55	6	385
	뉴질랜드	99	39	15	0	45
	피지	43	27	7	0	9

4) UN(United Nations) 관련 기구의 분포현황

- UN은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의 평화, 안보, 인권, 지속 가능개발,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 UN은 6개의 주요기구(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기구는 산하에 보조기관, 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음. 다만, 신탁통치이사회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또한 UN은 자체 회원, 예산, 조직 등을 갖춘 프로그램 및 기금, 전문기구, UN 관련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프로그램 및 기금 조직으로는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 등 14개 기구가 있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5개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2개소, 스위스 제네바 2개소, 케냐 나이로비 2개소, 독일 본 1개소, 이탈리아 로마 1개소, 덴마크 코펜하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표 8. UN 프로그램 및 기금

연번	명칭	영문명	본부 소재지	설립 연도
1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Geneva	1964
2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New York	1965
3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Nairobi	1972
4	유엔난민기구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Geneva	1951
5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Vienna	1950
6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New York	1946
7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New York	1967
8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Rome	1961
9	유엔마약범죄 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Vienna	1991
10	유엔인간정주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Nairobi	2002
11	유엔여성기구	UN Women (UN Women)	New York	2010
12	유엔연구사업소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Copenhagen	1974
13	유엔자본개발기금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UNCDF)	New York	1966
14	유엔봉사단	UN Volunteers(UNV)	Bonn	1970

- 다음, UN전문기구(UN Specialized Agencies)는 국제노동기구, 식량농업기구 등 15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5개소, 베른 1개소, 미국 워싱턴 DC 2개소, 이탈리아 로마 2개소, 영국 런던 1개소, 프랑스 파리 1개소, 캐나다 몬트리올 1개소, 스페인 마드리드 1개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1개소에 위치

하고 있음

- 전문기구 중 세계은행그룹은 5개의 기구(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기구 모두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음

표 9. UN 전문기구

연번	명칭	영문명	본부 소재지	설립 연도
1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Geneva	1919
2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Rome	1945
3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Paris	1945
4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Montreal	1944
5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eneva	1948
6	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1944
7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ashington D.C.	1944
8	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UPU)	Bern	1948
9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Geneva	1865
10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Geneva	1950
11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London	1958
12	세계지적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Geneva	1967

연번	명칭	영문명	본부 소재지	설립 연도
13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Rome	1977
14	UN산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Vienna	1966
15	UN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Madrid	1975

- 또한, 기타 UN 관련기구(UN Related Organizations) 등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이주기구 등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 6개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2개소, 독일 본 1개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1개소 위치

표 10. UN 관련기구 등

연번	명칭	영문명	본부 소재지	설립 연도
1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Vienna	1957
2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Geneva	1995
3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Geneva	1951
4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Geneva	1964
5	유엔에이즈계획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Geneva	1996
6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Geneva	1993

연번	명칭	영문명	본부 소재지	설립 연도
7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Hague	1997
8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Vienna	1996
9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Bonn	1994
10	유엔국제재해 경감전략기구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	Geneva	1999

- 그리고 UN 연구 교육기관으로 유엔군축연구소, 유엔훈련조사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있으며 스위스 제노바 3개소, 일본 도쿄 1개소, 이탈리아 토리노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표 11. UN 관련기구 등

연번	명칭	영문명	본부 소재지	설립 연도
1	유엔군축연구소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DIR)	Geneva	1980
2	유엔훈련조사연구소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Geneva	1965
3	유엔지역간 범죄조사처별기관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	Turin (Torino)	1967
4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	Geneva	1963
5	유엔참모양성학교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UNSSC)	Torino	2002
6	유엔대학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Tokyo	1975

5. 국제기구의 유치효과

1) 경제적 효과

- 국제기구 유치는 해당 국제기구 자체의 사업추진 및 소비 지출과 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이 상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생산·고용 유발효과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및 고용확충에 긍정적인 기여
 - 한국관광공사 연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상주 근무인원 2만 명의 국제기구를 집중 조성했을 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소비지출 증가 약 6조원, 생산유발효과 약 10조원, 고용유발효과 주재원 1인당 1명”으로 나타남⁷⁾
 - 한국고용정보원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연평균 1,6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연평균 64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연평균 1,21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⁸⁾

표 12. GCF 사무국유치의 경제적 효과 종합⁹⁾

(단위 : 억,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2020	합계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	인천시지원 소비지출	22.3	17.1	16.9	81.2	137.5	17.2
	사무국직원 소비지출	9.0	59.4	87.8	670.7	826.9	103.4
	국제회의 유치 소비지출	-	-	59.5	284.5	344.0	43.0
	계	31.3	76.4	164.1	1,036.4	1,308.3	163.5
부가 가치 유발 효과	인천시지원 소비지출	10.4	8.8	8.8	42.1	70.0	8.8
	사무국직원 소비지출	3.5	23.1	34.1	260.6	321.3	40.2
	국제회의 유치 소비지출	-	-	21.9	104.7	126.6	15.8
	계	13.9	31.9	64.7	407.4	517.9	64.7

7) 한국관광공사, 국제기구 한국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2, P.25.

8) 한국고용정보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고용영향평가, 2013, P.26.

9) 한국고용정보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고용영향평가, 2013, P.2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20	합계	연평균
취업 유발 효과	인천시지원 소비지출	147	121	120	576	964	121
	사무국직원 소비지출	60	394	582	4,452	5,489	686
	국제회의 유치 소비지출	-	-	558	2,668	3,226	403
	계	207	515	1,260	7,696	9,679	1,210

표 23 한국고용정보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고용영향평가, 2013, P.28. 참고

- 또한 국제기구는 기관의 특성상 국가 간 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각종 국제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하게 되며,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는 컨퍼런스 서비스, 호텔숙박, 식음료, 여행사업 등 MICE 산업과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
 -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약 28조 4천억원(직접효과 19조 2천억원, 간접효과 9조 2천억원), 소득유발효과 4조 6천억원(직접효과 3조 4천억원, 간접효과 1조 2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67,245명(직접효과 210,797명, 간접효과 56,448명)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보면, 생산유발효과 28조 4천억 중 미팅분야 22조 2천억원, 인센티브 분야 8천억원, 컨벤션 분야 4조 2천억원, 전시 분야가 1조 2천억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유발효과 4조 6천억원 중 미팅 분야 3조 6천억원, 인센티브 분야 1천 3백억, 컨벤션 분야 6천 7백억, 전시 분야가 2천억을 차지. 또한 고용유발효과 267,245명 중 미팅 분야 207,598명, 인센티브 분야 9,649명, 컨벤션 분야 38,723명, 전시 분야가 11,275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¹⁰⁾
 - 한국고용정보원은 “녹색기후기금(GCF)관련 국제회의 개최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소비지출 파급효과를 2013~2020년(8년) 동안 연평균 생산유발효과 4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8억원, 취업유발효과 403명”으로 추정¹¹⁾

10) 한국관광공사, 2011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2012.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자료¹²⁾에 따르면 “2014년 대구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분석 결과 직접지출효과 약 4,125억원, 간접지출효과 약 1조734억원, 고용창출효과 6,920명”으로 파악

2) 정치·외교적 효과

-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 경제·통상 문제, 빈곤과 기아, 환경 문제, 난민 증가 등 다양한 국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됨
- 따라서 국제기구의 유치는 환경, IT, 인권 등 특정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정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간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
- 그리고 국제기구가 그 국가 내에 소재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의 국력과 국격을 상징하기도 함
- 아래 표 13와 같이 정부간 국제기구 본부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확인 할 수 있음

표 13. 주요 선진국 정부 간 기구 본부 유치 현황

지역	국가	합계	국제기구 (A~D,F)	비독립적 기 구 (E,K,R)	국제기구의 대체 조직 (S,T)	국내설립 국제기구 (G,N)
유럽	프랑스	381	62	76	238	5
	스위스	350	56	87	203	4
	벨기에	145	46	53	39	7
	영국	136	41	21	85	3
	이탈리아	100	25	50	21	4
	오스트리아	86	21	30	30	5
	독일	80	23	27	24	6
미주	미국	293	75	105	93	20
	캐나다	57	11	10	33	3

11) 한국고용정보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고용영향평가, 2013, P.23.

12) 2016. 3. 17.자 일요신문 기사 참고

- 또한 국제기구 회의 개최,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하는 각 국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 국제기구 회원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의 추진, 서울시의 역사·문화·경제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가능

3) 사회·문화적 효과

-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환경, 빈곤, 기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세계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 선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선임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도 아래 표 14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4. 국제기구 진출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인원	458	480	530	543	571
고위직	42	44	46	50	30

-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기구 유치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국제적인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Ⅲ. 국제기구 유치과정과 소재지 결정 요인

1. 국제기구 유치과정

- 과거에는 국제기구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여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 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유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
- 2012년 10월 우리나라 인천으로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 사례를 보면, 녹색기후기금 설립단계부터 사무국 개소까지 약 3년이 소요
- 국제기구 본부 유치과정은 국제기구 설립단계, 국제기구 유치단계, 국제기구 유치 후 후속조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¹³⁾ 이러한 단계와 절차를 요약하면 표 15와 같음.

표 15. 국제기구(GCF) 유치과정

단계	주요내용	시기
국제기구 설립단계	국제기구 설립합의(이사국 설립합의 포함)	2010.10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설계위원회(40인) 구성	
	국제기구 설립의결	2011.12
	국제기구 설립방안 승인	
	국제기구 유치국가 선정절차 및 기준 기본지침 결정	
국제기구 유치단계	유치희망국의 유치활동(홍보, 설득, 면담, 서신 등)	2012.1-10
	유치제안서 접수	2012.4
	유치국가 선정절차 및 기준 확정	2012.8
	유치국가 평가위원회 구성	
	검토 및 선정 작업 착수	
	평가위원회 유치제안 검토	2012.8-10
유치국가 확정	2012.10	
국제기구 유치이후 조치단계	본부협정 내용협의 확정 및 입법절차 마무리	2012.11- 2013.7
	국제기구 본부출범	2013.12

13) 국제기구 유치과정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유치과정을 기준으로 작성

- 먼저, 국제기구 설립단계에서는 당사국 간에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합의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국제기구의 기본적인 조직구조, 업무내용, 지배구조 등을 규정하는 설립방안(Governing Instrument) 마련함.¹⁴⁾ 이 후 국제기구 설립방안이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설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설립을 의결하면서 유치국가 선정절차 및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결정. 국제기구 유치활동은 사실상 1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함. 즉 설립동의를 형성하는 과정과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유치의사 표명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공식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GCF의 경우 이러한 1단계는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거의 1년 정도 소요
- 다음으로 국제기구 유치단계에서는 국제기구 유치국가 선정 절차 및 기준을 확정하고 유치 국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국제기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에서는 각종 특권 면제 등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제정지원 및 정주여건 등이 포함된 유치 제안서를 제출,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시,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이사국 대상 유치활동과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인사 관련 유치활동 등을 전개하게 되며, 평가위원회에서는 제안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유치 국가를 결정하고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유치 국가 확정. GCF의 경우 이러한 2단계는 2012년 초부터 10월말까지 진행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유치 후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유치국가와 사무국 간에 본부협정(Headquarters Agreement)에 대해 협의 및 확정하고 이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 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과정과 국제기구 본부 출범 준비를 거쳐 정식으로 본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 GCF의 경우 유치국가 결정직후인 2021년 10월말부터 2023년 12월 사무국의 개소까지 기간이 여기에 해당.
-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제기구 설립논의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4) 녹색기후기금의 설립방안은 약 1년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2011년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

유치국가가 되려면 설립방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하여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도 유치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함. 또한 유치 국가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가용자원을 사용하여야 함. 물론 이러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우방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이 필요.

- 실제 유치활동 과정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 기준에 따라 유치 제안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 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임.
- 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각국 정부대표나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펼치게 되는 다양한 설득작업이다. 각종 국제회의 참석이나 주요 정부인사 간의 양자대면,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해외공관의 외국정부 접촉, 주한대사관에 대한 설명, 정상 간의 회담, 서한 발송이나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유치활동이 펼쳐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2.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 요인

- 1) 국제기구에 대한 법인격 및 행위능력 부여 능력
 - 국제법인격은 “국제적으로 법적 권리, 의무 및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및 국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국제법인격의 전형적인 내용은 “첫째 국제협정 또는 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둘째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국제법원 및 국제재판소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 셋째 국가 및 기타 국제적 행위자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넷째 특권 및 면제”임
 - 행위능력은 “국제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한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그리고 소재지 능력”을 들 수 있음
 - 국제기구가 주어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통관, 국제기구 평가를 위한 인사의 입·출국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국제 법인격과 법적 행위 능력이 주어지고 국제기구 및 임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주어져야 설립 준비 작업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음. 2012년 10월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경우에도 “당사국 총회의 유치국가 선정 지침에서나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 실제 유치국가 선정 기준에 있어서 국제 법인격과 법적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계획과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포함

- 따라서 국제기구의 국제 법인격과 법적 행위능력 부여 여부는 국제기구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음

2) 국제기구 및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

- 국제기구는 국가와 달리 고유한 자체의 활동영역이 없어 필요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역에서 소재해야만 함. 따라서 국제기구와 그 직원들이 이러한 소재지 국가들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하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특권과 면제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기구 유치국가 선정기준 및 국제기구 유치국과의 본부협정 등을 통해 구체화.
- 국제기구에 주어지는 특권과 면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은 없음. 다만, 국제기구 유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국제기구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특권과 면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제기구 유치 의향이 있는 국가들이 제공하는 특권과 면제의 내용이 비슷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권과 면제의 내용은 적용 대상에 따라 크게 두 부류, 즉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과 면제와 그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로 구분”될 수 있음.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기구 및 그 자산에 대한 법적 절차의 면제, 국제기구의 기금 및 수

입에 대한 면세, 고유 목적을 위한 물품·동산·부동산 구매 시의 면세, 기구 건물에 대한 불가침 및 안전보장, 우편 통신에 대한 검열 등 간접 배제, 문서의 불가침 등이 포함”.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비자 발급 등 체류허가, 고유 목적 수행을 위해 행한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세,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이 포함”.¹⁵⁾

- 국제기구 유치 희망국들이 유치될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국제기구의 소재지 결정에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음. 1961년 OPEC 총회에서 창설 회원국들은 사무국 소재지를 정치적 영향을 수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결정했지만 사무국 설립 후 스위스 정부가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OPEC에게는 불허하자 특권과 면제를 허용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전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국제기구 직원들이 세제 특혜나 고용된 가정부의 지위 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특권과 면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직원들 중에 자신들의 특권과 면제가 외교관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3) 행·재정적 지원과 정주여건

-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국제기구의 업무활동을 개시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쟁 국가 간에 사실상 대동소이하여 차이는 부분이 크지 않음. 따라서 행·재정적 지원과 정주 여건에서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유치국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행·재정적 지원 및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열거한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사무국 건물, 회의장 등 GCF 측에 제공되는 시설, 사무국 건물의 소유권, 기구·비품 설치, 중요한 수선, 보안 유지, 환경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고, 둘째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 안정되고 선진화된 금융거래 시스템, 생활비 수준 등을 포함하며, 셋째 각국 대표부가 소재하는

15) 국제기구 본부 유치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161P)

정도, 국제기구의 소재, 회의시설, 현대적인 통신설비, 국제적인 교통시설, 지역 내 교통편의, 의료시설 등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고용가능성, 주거시설, 학교, 지역 내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 가능성, 비자발급 용이 여부 등”을 포함함¹⁶⁾

- GCF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제기구의 소재지 문제를 들 수 있음.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들이 근거리 소재하는 경우 국제기구들 사이에 협력과 조정의 용이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요인의 중요성은 독일정부의 국제기구의 유치노력이 초반에 연거푸 실패한 것에서도 잘 드러남. 독일은 미국 뉴욕에 소재해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이전을 추구 하였으나 이들 국제기구들은 다른 유엔기구들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또한 독일이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이전에 실패한 주된 이유도 WTO와 협력이 필요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도국들마저 반대에 동참했기 때문임.
- 둘째, 대표권 행사가 용이한 대표부의 소재 여부도 소재지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특히, 이 요인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별도의 상주대표부나 외교사절단을 두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더욱 중요. 이 때문에 각국 대표부들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곳에 국제기구가 신설될 경우 유치 희망국들은 최빈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개도국 회원들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돕기 위해 무상으로 사무실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경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배우자의 부양가능성도 소재지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과거에는 국제기구 직원의 가족 중 일원이 직원과 동일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으나 유엔은 배우자의 고용기회 여부가 유엔에서 일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지원자의

16) 국제기구 본부 유치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162P)

관심을 끄는 데 점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유엔직원의 배우자가 관련 기구에 지원을 하는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유엔기구의 유치국 역시 유엔기구 직원의 배우자 고용을 위해 유엔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할 것을 언급 17)

- 이와 같이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도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에 유리하도록 국제기구 직원의 가족 중 특히 배우자의 취업을 위한 호의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면,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원가족의 일부로서 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Ci'라고 불리는 특별허가를 취득할 경우 스위스 인력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허가가 외국 노동력의 충원을 관할하는 관세법규나 집단적 근로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GCF의 유치를 위해 '체류 외국인관리지침'을 개정하여 ① 국제기구 배우자 취업에 대해서는 상호의 배제, ② 국제기구 직원 가족에 대한 활동범위 확대, ③ 외국통상부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직원 배우자 등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음. 중앙정부의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재의 지원뿐 아니라 미래의 지원에 대한 약속까지를 의미함. 여기에서 지원이란 재정지원 같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외교적 지원과 같은 비물질적 지원도 포함. 이러한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인적·물적 능력으로 인해 유치된 국제기구가 위축될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4) 국가(도시)의 매력적인 이미지

- 특정 국가 또는 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영세중립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중립'의 이미지가 구축되면서

1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Further Change(A/57/387), 9 September 2002.

각종 국제기구의 소재지로 선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중립의 전통으로 인해 석유수출국 국가들마저 정치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라는 국제기구를 비엔나에 소재시킴.

- 네덜란드 헤이그는 ‘평화와 정의’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소재지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헤이그는 ‘세계의 법률수도’ 또는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라고도 불리고 있음. 이러한 전통은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만국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개최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국제형사재판소(IC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을 유치

5) 국제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와 기여 가능성

- 이는 국제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에서 유치국이 축적하고 있는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까지 실제로 공헌해 온 것과 미래에 있어서의 공헌 가능성을 의미함. 이러한 요인이 강조되는 이유는 국제기구에게 해결이 맡겨진 문제와 동일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 오고 있거나 기여할 가능성을 지닌 소재지 국가의 전문가(혹은 전문가 조직)와 정책결정자의 협력이 국제기구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임.
- 이러한 요인의 중요성은 독일이 2012년 유치에 성공한 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IPBES)의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전개한 홍보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독일은 국제기구와 과학자 및 정책결정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IPBES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환경보호와 자연보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기관과 국제기구의 긴밀한 연계망과 더불어 광범위한 과학부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본이 최적지임을 강조한 바 있음

6) 기타

- 기타 유치 희망국의 안전보장 확보, 주도적인 국제기구 설립노력, 전문적인 홍보 등도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

3. 시사점

- 위에서 국제기구의 유치과정 전반과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 봄.
- 국제기구를 유치한 경험이 많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국제기구 하나가 글로벌 기업 3-4개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바 있음. 이러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효과도 상당히 큼. 이러한 효과 때문에 국가 간에 유치를 위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음
- 예를 들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범위도 국제기구 과장급 이상(P5)에 대해 외교관과 유사한 특권 면제를 부여하는 등 점차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며, 배우자의 취업기회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함. 중동의 UAE는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무기로 하여 2009년에 국제재생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를 유치
- 그러나,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은 학습을 통한 모방효과를 가져와 국제기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 대부분에 있어서 경쟁국과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요인에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IV. 국제기구 유치사례 분석

1. 독일 국제기구 유치 사례(본을 중심으로)

- 독일은 국제기구 후발 유치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음. 1991년 독일 수도 이전에 따른 기존 수도의 도시 활성화 및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 관련법을 제정하여 본을 국제기구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1,437 Billion 유로를 집중 투자
- 독일 정부는 “본을 독일의 UN City 및 미래의 중요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라인 강변에 위치한 前 정부 지구(government quarter)를 국제기구의 중심거점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UN캠퍼스를 조성하여 국제기구를 집중 유치하고 있으며, 전 하원의회 건물을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시설(World Conference Center Bonn)로 리모델링하여 UN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장소로 사용”하고 있음¹⁸⁾
- 특히, 2006년 6월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과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참석한 가운데 개원한 UN 캠퍼스는 “본의 도시 비전을 반영하는 랜드마크 건물로서 각종 UN기구의 활동 거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UN 캠퍼스에는 18개의 UN 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약 950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UN 캠퍼스의 국제기구의 거점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새로운 건물을 완공할 예정임
- 또한, 2003년도에 본에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라는 국제방송을 개설하고 라디오,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양한 국제문제를 다룸으로써 국제적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UN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8월 UN 캠퍼스 내에 국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18)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방안 연구” 102P

- 독일은 국제기구 후발 유치국으로서 극심한 국제기구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있어서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C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련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라는 3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개념으로 국제기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가짐. 또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국제사회가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고 있음. 이러한 독일의 전략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관을 가지는 국제기구를 대거 유치하는데 기여
- 그리고 독일은 국제기구 유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국내와 국제적인 접근의 용이성(어디든 연결되는 도로망, 기차와 항공의 연계성), 탁월한 인프라(가까이 소재해 있는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각종 교육 및 연구시설,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매력적이고 비싸지 않은 주택, 다문화 도시(개방적인 주민과 다수의 국제회의 유치), 높은 생활수준(매력적인 라인강 주변지역, 다양한 문화명소, 수준 높은 삶의 질, 적절한 생계비),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과업의 중심지(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의 결집과 높은 수준의 국가적 관심과 지원), 경제적 혜택의 제공(시설의 무상제공, 자발적 기여금 제공, 사무국 행사와 관련한 추가가금 제공, 이전비용, 직원과 직원 가족을 위한 어하코스 비용 제공), 국제기구 자체와 직원에 대한 유엔봉사단(UNV) 협정에 따른 다양한 특권과 면제 제공¹⁹⁾
- 본에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등 18개의 UN 관련 기구가 소재하고 있음. 1984년도에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UNEP-CMS)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1996년도에 UN봉사단 프로그램(UNV) 사무국,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UN정보센터를 유치

19) 특정 유해 화학물질과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의 사무국 유치를 위해 작성한 홍보 팸플릿 ‘Bonn: For a Host of Good Reasons’의 내용

하였고 1998년도에 발트해, 북동대서양, 아일랜드해와 북해의 소형 고래 보존에 관한 협정(ASCOBANS) 사무국을 비롯하여, 1999년도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2001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유럽 환경보건 센터(WHO-ECEH) 등을 차례로 유치

- 본 이외에도 독일은 베를린(Berlin)에 국제노동기구(ILO) 연락사무소, 유엔난민기구(UHCR) 지역사무소, 세계식량계획(WFP) 연락사무소, 세계금융그룹(World Bank Group)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함부르크(Hanburg)에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와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소재하고 있음
- 또한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는 세계금융그룹(World Bank Group) 국제금융공사(IFC)가 드레스덴(Dresden)에 유엔대학교 물질흐름 및 자원통합관리연구소(UNU-FLORES)가, 뮌헨(Munich)에 세계식량프로그램(WFP) Innovation Accelerator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스위스 국제기구 유치 사례(제네바를 중심으로)

- 스위스는 ‘중립’의 이미지와 ‘인도주의(humanitarianism)’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있음. 스위스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생존전략으로서 17세기 이래로 중립을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중립의 전통은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I.N)의 제네바 설립으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시대에도 철저하게 지속되어 유엔에 가입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한 바 있음.
- 이러한 중립전통으로 인해 분쟁이나 전쟁의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위한 회의가 필요할 때 스위스를 찾게 되었고 일련의 이러한 회의들이 후일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스위스는 앙리 뒤낭에 의해 1864년에 설립된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의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를 또 다른 전통적인 이미지로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R)를 비롯하여 인도주의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국제기구의 소재지가 되었음

- 스위스는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제네바의 경우 도시 계획에 국제 업무 단지를 반영하고 주변을 공공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유치에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에 국제기구와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부여를 규정한 ‘유치국 법령(Host State Act)’과 ‘유치국 시행령(Host State Ordinance)’를 채택하고 2008년 1월에 발효시킨 바 있음. 이 법률은 국제기구와 스위스 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국제기구와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명확히 하며, 시설과 재정보조 및 무상지원의 규모와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이미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기구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기구의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제정
- 또한 연방정부와 제네바 주정부가 공동으로 사립재단으로서 ‘국제기구 건립재단(Building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를 설립하여 국제기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 부지의 확보를 돕고 있음. 그리고 연방정부가 적지 않은 부분의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는 ‘제네바 국제회의 센터(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를 당 재단의 산하에 두어 국제기구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종 국제기구 유치에 전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리고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원가족의 일부로서 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Ci’라고 불리는 특별허가를 취득할 경우 스위스 인력 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허가가 외국 노동력의 충원을 관할하는 관세법규나 집단적 근로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스위스는 중립의 전통과 인도주의적 전통만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문제영역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평화·안보·군축, 인도주의와 인권, 보건, 노동·경제·과학,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5개의 중점영역으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5개의 영역을 ‘중점영역’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국제사회 문제영역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국제기구든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는 스위스 정부의 절실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짐

- 스위스는 UN 제네바 사무소를 비롯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만국우편연합(UPU),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의 본부, 유네스코 국제교육국(UNESCO IBE)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이주기구(IM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의원연맹(IPU),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음

3. 벨기에 국제기구 유치사례(브뤼셀을 중심으로)

-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유럽연합(EU) 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위치한 국제도시로 ‘유럽의 수도’로 불리고” 있으며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이 많이 소재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
 - 국제협회연합(UIA)에 의해 제공되는 ‘Open Yearbook’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말 기준으로 벨기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정부 간 국제기구가 145개가 소재하고 있고 비정부 간 기구는 2,461개가 소재하고 있음.

표 16.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유치 현황

지역	합계	국제기구 (A~D,F)	비독립적 기 구 (E,K,R)	국제기구의 대체 조직 (S,T)	국내설립 국제기구 (G,N)
정부간 국제기구	145	46	53	39	7
비정부간 국제기구	2,461	1,515	512	11	423

- 주요 국제기구로는 EU 본부와 NATO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 UN관련 기구로는 “유엔연구사업소(UNOPS), UN지역 정보센터, UNESCO 연락사무소, World Bank EU 사무국 등”이 있으며
 - EU관련 기구로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브뤼셀이 국제기구 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는 벨기에의 지리적 위치와 함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는 전체 국토 면적이 작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하고 있으며, 항만·공항·TGV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고, 국제업무 단지를 중심으로 2Km 정도에 역이 위치 하고 있으며.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브뤼셀 남 공항은 유럽전역을 커버하는 저가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어 유럽전역을 커버”하고 있음.
- 또한 벨기에는 “브뤼셀의 도심 동쪽에 865천 m^2 면적의 유럽연합 단지라는 국제기구 및 국제업무 단지 조성, NATO 본부 유치 경쟁 시 200헥타르의 군사 훈련용 부지 제공, UN기구를 위해서 ‘The UN House’를 건립하고 사무공간으로 제공, EU 본부 유치 시 제네바 등과 경합이 치열하자 외교관 신분이 아닌 EU 소속 공무원에게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4. 싱가포르 국제기구 유치사례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은 2007년 2월 EDB 내부조직으로 국제기구 유치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5년에 비해 4배가 증가한 14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소재
-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국제기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국제기구 유치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인 전략을 수립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²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국제기구 유치를

20)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108P~109P) 참고

MICE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고, 외국인 투자 유치대상을 외국의 자본·기술 등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기구’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폭넓게 해석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투자유치 정책을 전환. 이를 위해 경제개발청(EDB) 산하에 국제기구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유치사무소(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gramme office, IOPO)를 설치하고, 국제기구의 설립에서 운영지원에 이르는 업무를 총괄²¹⁾하도록 하고 국제기구를 위한 정책 및 법령 등을 개선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함으로써 국제기구를 유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내 다른 부처와 협력

- 또한 국제기구 간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Tanglin International Center를 마련하여 국제기구에 사무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고, 미팅과 회의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제기구가 상호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또한 “자선단체(charities)에 대해 한정되어 있던 법인세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자선단체가 아니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기구(non-charity IO)에 대해서도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국제기구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의 하나로 사이버 캠퍼스를 설립하여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교육 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er)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인세티브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소, 세계금융그룹(World Bank Group) 사무소,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글로벌 센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탁구연맹(ITTF)의 지역본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공인인력개발연구소(the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CIPD)의 아시아 본부, Worldwide Fund for Nature, Conservation International,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Birdlife International and Fauna & Flora International와 같은

21)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 108P

세계 탑 5에 속하는 비영리 환경단체들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5. 기타 사례 분석

- 태국은 1975년 5백만 달러를 들여 UN지역본부 건물 ‘UN House’를 건립하고 UN에 연간 1달러에 임대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외교관들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제공. 예를 들면, “직접세·VAT·관세 등의 면제, 개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해 1년 면세, 별도의 차량번호판과 ID카드 부여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 외 태국 정부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호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²²⁾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가장 강력한 유치후보국 이었던 독일을 물리치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유치에 성공. 아랍에미리트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요인을 살펴보면
 - 첫째, 국제기구의 지리적 분산²³⁾이라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개도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 둘째, 화석연료의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도시 건설을 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쌓아온 점을 들 수 있으며
 - 셋째는 2015년까지 해마다 2,200만달러를 IRENA에 지원하고 그 후에도 매년 1,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재정지원 약속과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 회원국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 IRENA를 유치할 수 있었음

6. 시사점

- 각국의 유치사례를 살펴보면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독일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도 이전으로 공동화 우려가 있는 본을 국제

22)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105P) 참고

23) 국제기구의 지리적 분산이란 기존의 보편적 국제기구의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에 소재하는 선진국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의 개도국 내지 중견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의미

기구 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기존 정부 부지에 UN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UN봉사단 프로그램(UNV) 사무국,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등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

- 두 번째는 국제기구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집중화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벨기에는 “브뤼셀의 도심 동쪽에 865천 m^2 면적의 유럽연합 단지라는 국제기구 및 국제업무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NATO 본부 유치 경쟁 시 200헥타르의 군사 훈련용 부지를 제공하고 UN기구를 위해서 ‘The UN House’를 건립하고 사무공간으로 제공”함.
 - 독일 본의 경우에도 “도시의 정체성을 ‘UN CITY’로 설정하고 라인강변에 위치한 前 정부지구(government quarter)에 UN캠퍼스를 조성하여 국제기구를 집중 유치하고 있으며, 전 하원의회 건물을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 시설(World Conference Center Bonn)로 리모델링하여 UN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 장소”로 사용
- 세 번째는 국가(도시)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C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련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중립’의 이미지와 ‘인도주의(humanitarianism)’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구축하여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바탕이 됨
- 네 번째는 국제기구 유치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유치경쟁에서 경쟁우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도시들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업무공간의 저렴한 임대는 물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세제에 있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마련.
-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후발 유치국으로서 선발 유치국인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같은 후발 유치국인 독일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

와 다른 국가와 차별화 되는 전략한 수립한다면 충분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임

V.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국제기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강력한 국제기구 유치 의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왜냐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제기구는 UN 관련 기구이거나 정부 간 기구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협조 및 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이후,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유치된 국제기구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2012년 11월 ‘국제기구 유치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유치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도 이전으로 공동화 우려가 있는 본을 국제기구 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Berlin/Bonn Act)을 제정하고, 기존 정부 부지에 UN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UN봉사단 프로그램(UNV) 사무국,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등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함
-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는 국제기구 1개가 글로벌 기업 3~4개의 효과와 비슷하다는 판단 아래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제네바의 경우 도시 계획에 국제 업무 단지를 반영하고 주변을 공공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08년에 국제기구와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부여를 규정한 법령 제정 . 또한 연방정부와 제네바

주정부가 공동으로 사립재단 ‘국제기구 건립재단(Building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를 설립, 그리고 연방정부가 적지 않은 부분의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는 ‘제네바 국제회의 센터(Genev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를 당 재단의 산하에 두어 국제기구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구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두 번째는 글로벌 도시 서울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국제기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각국 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조건이 유사성 띄어 가고 있음. 따라서 많은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한 국가(도시)들의 예에서 보듯이 글로벌 도시 서울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 필요
- 국제기구 후발 유치국인 독일의 본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C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련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라는 3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개념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국제사회가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해오고 있음. 독일의 이러한 이미지는 시의성과 포괄성을 지닌 경쟁력을 가진 이미지로 국제기구 유치에 커다란 기여를 함.
-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는 ‘평화와 정의(peace and justice)’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로서 국제기구들의 소재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해 헤이그는 ‘세계의 법률수도(Legal Capital of the World)’ 혹은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라고도 불림.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국제형사재판소(IC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둠
- 다만, 특정 이미지로 고착될 경우 국제기구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여야 함. 프랑스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호의적인 여건을 거의 다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유치전에 뛰어 들고 있는 주요 경쟁대열에 합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파리가 유네스코

(UNESCO)라는 국제기구를 유치한 이래로 교육·과학·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

- 또한 스위스는 ‘중립’ 및 ‘인도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다양하게 등장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문제영역을 다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평화·안보·군축, 인도주의와 인권, 보건, 노동·경제·과학,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5개 영역으로의 이미지 확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 번째는 국제기구의 설립취지, 목적 등에 따른 맞춤형 전략수립 필요. 국제기구의 설립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을 때 기후변화 원조규모가 세계 2위인 독일이나 국제기구 중심 도시인 스위스 등 강력한 경쟁국을 물리치고 유치국이 될 거라고 기대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았음. 그러나 녹색기후기금의 설립취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음.
-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보면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중점 부각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개발경험을 통해 개도국의 어려움과 선진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논의에서 개도국-선진국간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가교역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 두 번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임을 강조. 우리나라는 발전과정에서도 산림녹화 등 환경보전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에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국가라는 점을 강조. 세 번째,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주요 환경관련 기구가 유럽과 북미 등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에도 UNEP이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네 번째, 개도국이면서도 자발적인 재정지원 부각.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자원 공여의무는 없는 상태였으나 GCF 유치에 적극적이며, 운영비·능력배양지원 등 자발적 지원에도 적극적임을 강조. 우리나라는 사무국 운영경비 9백만불을 지원

(임시사무국 운영경비 2백만불 포함), 사무국 건물 무상임대, 개도국 역량구축 용도로 4천만불을 지원 예정임을 강조. 또한 인천 송도의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성, 국제기구 전용건물에 무상으로 즉시 입주가능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

- 네 번째는 민·관·정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치권의 전 방위적인 지원이 있을 때 가능
- 녹색기후기금의 유치 추진체계를 보면, 최고 의사결정은 주로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 외에도 관계장관회의·서별관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논의.
- GCF관련 업무총괄 및 협력을 위해 GCF 정부유치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 정부유치추진단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녹색위, 인천광역시 등 차관보급 고위 공무원이 참여. 정부유치추진단 전체 회의는 3차례 개최되었으며, 수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의 유치활동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 특히, 추진단은 유치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관계부처·기관간 공조를 위해 이메일 리스트 등 연락체계를 갖추고, 각 부처·기관과 재외공관 등의 유치관련 교섭현황을 정리하여 수시로 공유
-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녹색기후T/F팀을 구성. 녹색기후T/F팀은 기획재정부 팀장 1명, 사무관 2명, 수출입은행 파견 1명, 인천광역시 파견 사무관 1명 및 주무관 1명이 참여하여 GCF 유치관련 모든 실무업무를 담당
- 국제기구 유치활동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학계, 업계, 언론, NGO 등으로 구성된 GCF 민간유치위원회 구성.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이회성 IPCC부위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유치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유치전략 수립 등에 대해 조언하고 각자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정보 수집이나 유치활동 측면 지원

- 이외에도 인천광역시도 자체적으로 인천시 범시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을 펼침. 범시민 자문위원회는 정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 등을 망라하는 123명을 위원으로 위촉. 인천시는 자문위원회 이외에도 GCF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GCF 인천 유치를 지원하는 송도마라톤대회, 시민걷기대회, 송도세계문화축제, IFEZ HAPPY·FUN CONCERT, GCF Welcome Concert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친환경자전거축제, Good Marker, 송도의 환경정비에 나선 ‘클린업 데이(Clean-Up-Day)행사를 추진하는 등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송도를 알리기에 적극 노력”²⁴⁾함.
- 또한 국회에서는 2012년 여야합의로 배출권거래법을 통과시키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대한민국 인천 유치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서 GCF 유치에 중요한 역할 수행. 결의안에는 GCF 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되면 GCF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격과 법인능력, 특권과 면책권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GCF 이사국 모두에게 천명하고 GCF 사무국의 대한민국 인천 유치에 대한 이사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위의 녹색기후기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체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은 신속한 의사 결정,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 부처 및 민간과의 역할 분담, 관계부처의 역량 및 경험공유 등을 통한 국제기구 유치동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
- 다섯 번째는 국제기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DATA 구축 필요.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 유치를 주도하거나 설립 논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왜냐하면, 국제기구의 기본적인 조직구조, 업무내용, 지배구조 등을 규정하는 설립방안 (Governing Instrument)과 국제기구 유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이 국제기구 설립 시 대부분 마련되기 때문임
- 녹색기후기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녹색기후기금의 기본적인 조직구조, 업무내용, 지배구조 등을 규정하는 설립

24) 머니투데이 2012년 10월 20일 “송도 GCF 사무국 유치…'인천시민 뭉친 결과물” 기사 중 일부

방안을 1년간의 기간을 두고 만들기로 하였으며, 이 작업을 맡아 수행할 기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들을 포함한 40인으로 설계 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표도 참여. 2011년 제17차 유엔기후변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성과위원회가 제출한 설립방안을 승인하면서 녹색기후기금의 설립을 공식 결정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 유치국가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결정. 또한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이사회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유치 국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인 받도록 함.

- 따라서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정부와의 협조, KOTRA·KOICA·관광공사 등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및 서울시 자체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국제기구 신설, 국제기구 이전, 국제기구 지역사무소의 개설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동향 및 국제기구 유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DATA 구축 필요
- 여섯 번째는 서울시의 국제네트워크 지속적인 확대 필요. 국제기구 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국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패키지 및 경쟁력 있는 유치 제안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 설립, 기존 국제기구의 이전, 새로운 지역 사무국의 설치 등 국제기구 변화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국제기구 설립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위원회 구성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실제로 각국 정부대표나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펼치게 되는 다양한 설득작업도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때 관련부처·지자체 및 민간위원 등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의 다양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지속 확대 및 자매 우호도시 시장 초청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국제회의 개최 및 주도적 참여, 유력인사의 초청 및

전략적 해외순방,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의 확대, 국제기구 간담회,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협력강화 및 해외 공무원 초청 교육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일곱 번째는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 필요.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국가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교 사회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파급효과 대비 국제기구 유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국제기구 유치 이후에 처음 의도한 바와 달리 기대한 만큼의 운영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언론²⁵⁾은 “GCF 사무국을 통해 거둘 것으로 예측한 경제적 효과도 과다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유치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경제효과는 연간 4000억여원. 직원 500명이 연간 1억3000만원씩 소비해 650억원, 내국인 고용으로 125억원, 연간 고용유발효과 1915명 등을 합산한 규모다. 하지만 지금 GCF 사무국 상주 직원은 100여명에 불과하고, 내국인 고용은 사실상 전무’, ‘유치 당시만 해도 녹색도시로 발전하고 경제적 이익도 많을 거라고 홍보하던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것 같다. 이익은 커녕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지적, “2012년 송도에 유치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매년 10억 지원 불구 발언권도 없는 한국” 등 녹색기후기금 유치 후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보내고 있음.
-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무늬만 국제기구로서 특별한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존재하며, 2017년 2월말 기준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간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69,282개의 국제기구 중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32,677개(약 47.2%)의 국제기구가 비활동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기구 유치를 검토함에 있어 국가 및 도시, 지역사회 및 산업에 있어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국내 각 지자체 간에 국제기구 유치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이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치킨게임이 됨으로써 유치에 성공

25) 2016년 11월 28일 인천일보, 2016년 7월 18일 경향신문 기사 참조

하더라도 투입대비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유치 이후에도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 내국인 고용 활성화 등 방안 수립이 필요

- 여덟 번째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제도 기반 확립이 필요.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활동 및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이나 법률만이 존재하고 있음. 녹색기후기금의 법적능력, 기금의 출연 및 방법,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와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와 지원범위, 지원방식, 유치 대상 기구의 선정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법안마련이 필요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유치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반면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이 이루어져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함. 따라서 외부에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또는 연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 업무 매뉴얼 마련과 국제기구 유치 백서 등의 공유가 필요
- 또한 국제기구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기구 간 네트

워크 활성화, 입주기구의 업무 편의성 확보 및 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그리고 국제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님.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상호 협력, 국제기구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제마인드 제고 및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어야 가능할 것임. 결국 국제기구를 유치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VI. 맺음말

- 글로벌화와 함께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커짐.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국가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가 큼.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 정부에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인식하고 국제기구 추가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현황과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IT·반도체·원자력·게임·컨텐츠 등 산업관련단체,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국제평화 관련 기구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구 창설과 유치를 추진할 예정”임

- 서울시에서도 ‘아시아의 국제기구 허브, 서울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2020년까지 50개 국제기구를 유치할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 실행 과제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
- 결국,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국제기구 허브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 단체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국제기구의 일원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 여건 등의 마련도 필요
-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기구에서 우리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정홍상(2015), 국제기구 본부 유치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의정논총(제10권 제1호).
한국관광공사(2012), 국제기구 한국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2010),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전략.
서창록(2004),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사.
박재영(2015), 국제기구 소재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독일, 한국,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16권 제4호)
국제기구저널(2008), 3(1)45-74
박경아(2010), 글로벌 리더 더 큰 대한민국, Weekly 공감(2010.4.14.일자).
이태숙·장태순(2014),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국제기구 유치환경 분석 : 성공,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전시연구(제9권 제1호).
한국고용정보원(201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고용영향평가.
최철영.(2013), 글로벌시대 국내유치 국제기구의 법인격:한·아시아 산림협력기구 (AFoCO) 사무국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통권 제44호).
국토연구원(2007), 세계의 도시(109):EU, NATO가 등지 튼 "유럽의 수도"브뤼셀(Planning and policy Vol.311).
한국관광공사(2012), 2011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한국관광공사(2013), 2012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한국관광공사(2015), 2014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한국관광공사(2016), 2015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외교부(2015), 2015년 유엔개황.
기획재정부(2013), 녹색기후기금 유치백서.
서울시(2016), 2016년 국제기구 유치·교류협력 추진계획.
서울시(2013),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외교부(2013),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기획재정부(2013),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일보(2016.11.28),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빈손 4년'.
경향신문(2016.7.18.), 2012년 송도에 유치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매년 10억 지원 불구 발언권도 없는 한국.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UIA : <https://www.uia.org/ybio/>

UN : <http://www.un.org/en/index.html>
싱가포르 EDB : <https://www.edb.gov.sg/>
벨기에 정부 : <http://www.belgium.be/en/>
본(Bonn) 시정부 : <http://www.bonn.de/>
브뤼셀 시정부 : <http://www.bruxelles.irisnet.be/>